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5일, 서천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사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9.)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5회 국회(임사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천호 의원)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검토의견]

1. 낚시터업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 처분 사실 확인 절차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와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¹⁾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낚시터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과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에게 승계된다.

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공모하여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는 경우 통상 승계인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피승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승계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승계인이 승계 시에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²⁾,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또한,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³⁾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가 그 영업을 승계 시에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민원사례(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부당한 행정제재 효과 승계 없앤다”, 2023.05.11.)

□ 개정안은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와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취지에서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 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한 바 있는데,⁴⁾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에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에 관한 특칙’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23년 8월) 하였지만 「행정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제외됨에 따라 개별 법률의 정비를 통한 권고 이행이 필요한 상황임.
- 유사입법례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도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 ㄷ씨는 영업시설 양수를 고려하면서 ‘행정처분 승계 내역을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청은 ‘행정처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본인이 아닌 경우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4)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31쪽(국민권익위원회, 2023.07.10.)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⑤ 선의 보호 및 용이한 입증을 위한 규정 도입	○ 행정처분 전력 및 위반행위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제34조 등 43개 규정에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기관

되어 있음.

[유사입법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행정제재 효과의 승계) ②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②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 다만, 유사입법례에서는 양수인 등에게 종전 사업자의 행정제재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본 개정안은 종전 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적 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 사업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승계인이 행정제재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입법취지 달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입법례와 같이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제재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선의의 양수인이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개정안과 같은 확인 절차는 그 입증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확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유사입법례와의 법체계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제재의 승계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등 법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행정제재 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⁵⁾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⁶⁾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선의의 양수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5)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종전 낚시터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제재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결함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종전 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적 확인으로 규정할 경우 종전 사업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승계인이 행정제재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입법취지 달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종전 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제재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4항 중 “종전의 낙시터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낙시터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를 “낙시터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 (피상속인은 제외 한다)의 동의를 얻 어 낚시터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 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 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 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 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u>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u>낚시터업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 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지 및 행정제재처 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u> ----- ----- ----- ----- ----- ----- -----

	<u>청하는 경우 해양</u> <u>수산부령으로 정하</u> <u>는 바에 따라 이를</u> <u>확인하는 서류를</u> <u>발급할 수 있다.</u>	-----.
--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1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낙시터업자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낙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u>